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925

발의연월일: 2024. 7. 18.

발 의 자:이종배·강선영·서천호

신동욱 • 박덕흠 • 정동만

김상훈 · 김성원 · 엄태영

김승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종사자 채용 시성범죄 경력조회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2023년 여성가족부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 대상 성범죄 경력자 취업여부 점검 결과 취업제한 처분을 받았음에도 학원, 청소년 이용시설 등에서 근무하다 적발된 사람이 121명에 달하였음. 이는 관련 제재가 경미하여 제도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않는 것 으로 보임.

이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이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동 제도가 목적한 바가 최대한 효과적으로 달성되도록하려는 것임(안 제67조제2항제1호의2 신설 및 제3항 삭제).

법률 제 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1의2. 제56조제5항을 위반하여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67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제67조(과태료)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56조제5항을 위반하여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 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 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 지 아니하는 아동 · 청소년 관 련기관등의 장 2. (생략) 2. (현행과 같음) <삭 제> ③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이 제56조제5항을 위반하여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 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 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 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 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 ⑤ (생 략)

④ · ⑤ (현행과 같음)